



COVID-19

지침: 야외 좌석 라이브 이벤트 및 공연

2021년 3월 26일 2021년 4월 1일 발효

이 지침은 주 전역에 걸친 부문 및 활동 개방을 다루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로컬 보건 담당자는 로컬 전염병학적 상황에 맞춘 보다 엄격한 규칙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고용주는 관련 현지 개점 정책도 확인해야 합니다.



개요

COVID-19 팬데믹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건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알려진 질병은 매우 경증(일부 사람은 증상이 없음)에서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질병까지 이릅니다. 심장 질환이나 폐 질환, 당뇨병과 같은 중대한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비롯한특정 집단은 입원 및 심각한 합병증을 겪게 될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중증의 질병과 사망 위험이 증가합니다. 팬데믹이 전개됨에 따라, 많은 장기가 COVID-19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감염이 누군가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경로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대부분의 COVID-19 감염자는 회복되어 본래의 건강 수준으로 돌아가지만, 급성 질환에서 회복된 후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입원하지 않고 경증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지속적인 또는 후기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감염자와 밀접하게 접촉하였거나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에 함께 있는 경우 전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감염자가 증상이 있거나, 증상이 없거나, 아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전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입자는 실내 공간에서 6피트 이상 이동할 수 있으며 감염된 사람이 방을 떠난 후에도 공중에 떠 있을 수 있습니다. 실내 환경은 실외 환경보다 전염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감염자가 예를 들어 운동과 함께 노래나 구호, 큰 소리로 말하기, 또는 심한 호흡과 같은 특정 활동을 하는 경우, 정상적인 호흡과 말하기에 비해 위험이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일반 대중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주요 예방 실행 항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 최대한의 물리적 거리두기 확보
- ✓ (호흡기 보호가 이미 필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고객의 얼굴 가리개(마스크)사용
- ✓ 실내 장소에서는 모든 공간에서 충분한 환기 보장
- ✔ 잦은 손 씻기와 정기적인 세척 및 소독
- ✓ COVID-19 예방 계획 상의 이러한 항목들과 기타 요소에 대한 근로자 교육 실시

2020년 11월 30일, 캘리포니아 산업안전보건국(Cal/OSHA)은 근로자들이 <u>Cal/OSHA의 에어로졸전염병 표준</u>으로 보장되지 않는 대부분의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COVID-19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의무적인 <u>긴급 임시 표준(ETS)을 시행했습니다</u>. ETS에 따르면, 고용주는 직장 내 질병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를 개발 및 이행하고, 새로운 질병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식별하며, 새로운 질병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개입하여 공중 보건 당국과 협력하여 바이러스 확산을 중단할 의무가 있습니다. ETS는 이 지침에서도 다루는 주제를 다룹니다. 공중 보건 지침에서 ETS에서 요구하는 것이상의 추가 *요건*을 부과하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 ETS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의 공중 보건 목적을 위한추가 권장 관행을 강조하기 위해 지침을 업데이트했습니다.

목차

목적
안면 가리개 필수 사용
직장 COVID-19 예방 프로그램
발병 및 검사
개별 통제 조치 및 선별 검사
환기10
청소 및 소독 절차10
물리적 거리두기 지침1
라이브 관객이 있는 장소를 위한 추가 권장 사항1
출입 및 보안 권장 사항1
제작 부서를 위한 추가 권장 사항12
공연자를 위한 권장 사항12
음악 공연자를 위한 권장 사항12
리허설에 대한 권장 사항1;
여행을 위한 권장 사항1;
건설 공장 및 세트 설계에 대한 권장 사항14
장면, 사운드, 소품, 장비, 특수 효과 및 조명에 대한 권장 사항1.
복장 및 의상에 대한 권장 사항1.
헤어 및 메이크업을 위한 권장 사항1.

목적

이 문서는 근로자와 고객을 위한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놀이공원 및 테마파크("공원"이라 칭함)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다른 장소(예: 식당, 바 또는 예배당)에서 이루어지는 공연도 해당 부문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업소는 업소가 속한 카운티의 위험 수준을 파악하고 모니터링해야 하며, 운영에 필요한 조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카운티 상태에 대한 최신 정보를 보려면 Blueprint for a Safer Economy(더 안전한 경제를 위한 청사진)를 방문하십시오. 지역 보건부가 보다 엄격한 기준 및 다른 폐쇄 조치를 시행 중일 수 있습니다. <u>카운티의 현지 정보를 확인하십시오.</u>

- 모든 계층에서: 모든 장소는 라이브 관객이 없이 방송 또는 스트리밍을 위해 열 수 있습니다. 라이브 관객이 참여하는 공연의 경우, 장소는 다음을 포함하여 본 지침에 설명된 수정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 o 적극적으로 식사 및/또는 음주를 하지 않는 한, 실내 및 실외의 모든 장소 전체에서 안면 가리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고객은 즉시 시설에서 퇴장해야 합니다. CDPH 안면 가리개 지침에 명시된 면제를 허용합니다.
 - o 공연 부문의 공연자 및 근로자가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고 공연이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업무가 실제로 수행되는 기간 동안 (1)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은 공연자 또는 근로자가 다른 모든 사람으로부터 최소 6피트 떨어져 있거나 또는 (2)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은 모든 공연자 또는 근로자 및 이들과 접촉하는 모든 근로자가 매주 2회 이상 정기적으로 COVID-19 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PCR 또는 항원은 공연자 또는 근로자의 일상적인 검사를 위해 허용되는 진단 검사입니다).
 - o 운동선수는 다음 얼굴 가리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미국 대표로서 스포츠에서 경쟁하거나(예: 올림픽 및 장애인 올림픽 경기) 스포츠 경기로 생계를 유지하는 **프로 선수** 및 노조 대표와 관련 전문 관리 조직 간에 노동/관리 계약을 체결하는 프로 선수는 그 계약의 해당 얼굴 가리개 요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 대학 운동선수는 <u>고등 교육기관 지침</u>의 특정 얼굴 가리개 착용 요구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 프로, 준프로 및 레크리에이션 선수를 포함하여 노동/관리 합의의 대상이 아닌 **기타** 모든 선수는 <u>CDPH 청소년 및 성인 스포츠 지침</u>의 구체적인 마스킹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 공연 부문의 공연자와 근로자는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고 항상 물리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거나, 항상 얼굴 가리개를 착용할 수 없지만 위의 정기적인 검사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실내에서 리허설을 할 수 있습니다. 야외 리허설을 적극 권장합니다.
 - o 운동 선수, 예술가 및 근로자는 노동/관리 계약, 고등 교육 지침 또는 청소년 및 성인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지침에서 요구하는 모든 해당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 ㅇ 장소 운영자는 참석자 간에 섞이지 않도록 행사 사이에 최소 2시간의 간격을 둬야 합니다.
 - o 다른 가정의 사람들 간에 최소 6피트의 물리적 거리두기를 허용하려면 지정된 좌석이 필요합니다.
 - o 고객 그룹을 3가정 단위로 제한합니다.

- o 관중의 좌석 위치는 고정 또는 표시되어야 하며, 섹션, 열 및 좌석(지정된 좌석)별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표지판이 있어야 합니다. 지정된 좌석은 1인당 적절한 공간을 가진 개인을 위한 공간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하며(그룹 예약 또는 그룹 구역이 아님), 비영구적인 좌석 배치는 관람자가 변경하지 않아야 합니다.
- o 관객이 고함 소리, 노래, 구호, 야유, 공기 배출이 필요한 소음 발생기(예: 부부젤라) 및 오염된 날숨 비말과 에어로졸로 인한 전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타 유사한 행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 o 중앙통로와 복도에 사람이 집중하지 않도록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해야 합니다.
- o 공유 악기는 사용자 간에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세척 및 소독해야 합니다. 뮤지션은 가능하면 항상 자신의 악기를 연주해야 합니다(예: 싱글 피아노 듀엣 중단).
- 야외 음식 및 음료 영업 구역은 항시 물리적 거리를 유지되는 전제에서 허용됩니다. 실내 영업 구역은 주황색 및 황색 등급에서 달리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한 폐쇄되어야 합니다.

<u>좌석을 배정한 야외 장소(예: 스포츠 경기, 라이브 극장 공연)의 경우, 더 안전한 경제를 위한 청사진을</u> 참조하여 카운티의 현재 등급을 정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출석 및 수용 인원 제한이 적용됩니다.

- 자주색 광범위함 1등급: 라이브 관객이 있는 공연이나 이벤트를 위해 장소를 개방할 수 있으며(허용되는 야외 장소는 아래 참고 사항 참조) 다음과 같은 본 지침의 수정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 o 출석 제한:
 - 장소는 규모에 관계없이 6피트 물리적 거리두기 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 100명까지 입장이 허용됩니다.
 - 지역 관중만 해당, 120마일 이내. 고객이 예약 및 발권 요건을 알 수 있도록 예약 및 발권 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통신 수단에 정보가 잘 보이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고객이 티켓을 구매할 때, 운영자는 고객의 좌석 예약 블록에 한 가정만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고객의 모든 일행원이 장소에 오기 위해서 120마일 이상 여행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받아야합니다.
 - o 행사 당일 또는 행사장의 문 앞에서 입장권을 판매할 수 <u>없습니다</u>. 티켓은 사전 예약만 가능합니다.

- 빨간색 상당함 2등급: 라이브 관객이 있는 공연이나 이벤트를 위해 장소를 개방할 수 있으며(허용되는 야외 장소는 아래 참고 사항 참조) 다음과 같은 본 지침의 수정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 o 출석 제한:
 - 행사 장소 입장은 최대 수용 인원의 20%로 제한해야 합니다(설계/운영 능력 또는 소방서 수용 인원 제한 기준). 스위트룸 방문객은 이 수용 인원 한도에 포함됩니다.
 - 각 스위트는 수용 인원의 25%로 제한되며, 각 스위트 내에서 물리적 거리두기는 3가구이하, 또는 동일한 가구에서 6명 이내여야 합니다.
 - 주 내 관중만 해당. 고객이 예약 및 발권 요건을 알 수 있도록 예약 및 발권 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통신 수단에 정보가 잘 보이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고객이 티켓을 구매할 때, 운영자는 고객의 좌석 예약 블록에 한 가정만 포함되어 있으며 고객과 고객 일행의모든 멤버가 주 내 방문자라는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 o 라이브 야외 이벤트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 고용주는 다른 근로자, 지원 직원 또는 공연자를 만날 수 있는 모든 근로자의 주간 선택적 검사를 위한 근로자 COVID-19 검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PCR 또는 항원은 검사 간격이 7일 이하인 근로자/공연자에게 허용되는 진단 검사입니다. 이전에 검사를 받은 후 7일 이상 지난 후 직장으로 복귀하는 근로자/공연자의 경우, PCR 검사만 허용됩니다.
 - 정기적인 주간 검사에 참여하는 공연자, 운동선수 및 근로자는 점유 인원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기적인 주간 검사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모든 공연자, 운동선수 및 근로자는 점유 인원 한도에 포함됩니다.
 - ㅇ 티켓은 사전 예약만 가능합니다.
- 주황색 중등도 3등급: 라이브 관객이 있는 공연이나 이벤트를 위해 장소를 개방할 수 있으며(허용되는 야외 장소는 아래 참고 사항 참조) 다음과 같은 본 지침의 수정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 o 출석 제한:
 - 행사 장소 입장은 최대 수용 인원의 33%로 제한해야 합니다(설계/운영 능력 또는 소방서 수용 인원 제한 기준). 스위트룸 방문객은 이 수용 인원 한도에 포함됩니다.
 - 각 스위트는 수용 인원의 25%로 제한되며, 각 스위트 내에서 물리적 거리두기는 3가구이하, 또는 동일한 가구에서 6명 이내여야 합니다.
 - 모든 고객이 입장 전 72시간 이내에 음성 검사 결과를 보여주거나 완전한 예방접종의 증거를 보여주는 경우, 장소는 출석 수용 인원을 67%로 늘릴 수 있습니다.
 - 주 내 관중만 해당. 고객이 예약 및 발권 요건을 알 수 있도록 예약 및 발권 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통신 수단에 정보가 잘 보이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고객이 티켓을 구매할 때, 운영자는 고객의 좌석 예약 블록에 한 가정만 포함되어 있으며 고객과 고객 일행의모든 멤버가 주 내 방문자라는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 라이브 야외 이벤트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 고용주는 다른 근로자, 지원 직원 또는 공연자를 만날 수 있는 모든 근로자가 주중에 선택적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 COVID-19 검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PCR 또는 항원은 검사 간격이 7일 이하인 근로자/공연자에게 허용되는 진단 검사입니다. 이전에 검사를 받은 후 7일 이상 지난 후

직장으로 복귀하는 근로자/공연자의 경우, PCR 검사만 허용됩니다.

- 정기적인 주간 검사에 참여하는 공연자, 운동선수 및 근로자는 점유 인원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기적인 주간 검사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모든 공연자, 운동선수 및 근로자는 점유 인원 한도에 포함됩니다.
- o 티켓은 사전 예약만 가능합니다.
- o 실내 영업 구역과 중앙 홀 판매는 반드시 폐쇄되어야 하며, 수용 정원의 25% 이하로 운영되는 좌석 지정 식사 공간은 제외됩니다.
- 노란색 최소 4등급: 라이브 관객이 있는 공연이나 이벤트를 위해 장소를 개방할 수 있으며(허용되는 야외 장소는 아래 참고 사항 참조) 다음과 같은 본 지침의 수정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 o 입장 제한
 - 행사 장소 입장은 최대 수용 인원의 33%로 제한해야 합니다(설계/운영 능력 또는 소방서 수용 인원 제한 기준). 스위트룸 방문객은 이 수용 인원 한도에 포함됩니다.
 - 각 스위트는 수용 인원의 25%로 제한되며, 각 스위트 내에서 물리적 거리두기는 3가구 이하, 또는 동일한 가구에서 6명 이내여야 합니다.
 - 정기적인 주간 검사에 참여하는 공연자, 운동선수 및 근로자는 점유 인원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기적인 주간 검사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모든 공연자, 운동선수 및 근로자는 점유 인원 한도에 포함됩니다.
 - 주 내 관중만 해당. 고객이 티켓을 구매할 때, 운영자는 고객의 좌석 예약 블록에 한 가정만 포함되어 있으며 고객과 고객 일행의 모든 멤버가 주 내 방문자라는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 o 티켓은 사전 예약만 가능합니다.
 - 。 실내 영업 구역과 중앙 홀 판매는 반드시 폐쇄되어야 하며, 수용 정원의 50% 이하로 운영되는 좌석 지정 식사 공간은 제외됩니다.

허용되는 야외 장소: 본 지침의 목적상, 라이브 관중 공연을 위한 허용 가능한 야외 장소는 다음이 요구됩니다.

- 원형 무대, 필드 코트 또는 주로 관중이 엔터테인먼트 또는 운동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타 중앙 구역 또는 정의되고 경계가 있는 야외 구역에 초점을 맞춘 영구 및 고정 시설 좌석 배정에는 가정 그룹 간 최소 6피트의 거리를 명시해야 하며 좌석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 시설은 지붕 없이 하늘로 열려 있거나 전체 경계의 최소 50%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즉, 개방 또는 폐쇄 여부와 상관없이 공기 흐름을 제한하는 벽, 문, 창문, 칸막이 또는 기타 물리적 장벽이 없어야 합니다. 기계적 시스템의 지지 없이 에어로졸의 농도를 효과적으로 희석 및 분산시키기에 충분한 자연 환기 및 공기 순환이 있어야 합니다.
- 시설은 직원이 모든 방문자의 흐름, 출입을 완전히 제어하고 일반 관중으로부터 공연자, 예술가와 직원을 격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 청중/관중들이 점유하는 공간과 중심점(무대 또는 원형 무대) 사이에 최소 12피트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영구적인 장벽이나 추가된 장벽이 있어야 합니다.
- 추가 정보는 실외 사업 운영을 위한 임시 구조물에 관한 CDPH 지침을 참조하십시오(CDPH 지침 참조).

지역 보건부가 보다 엄격한 기준 및 다른 폐쇄 조치를 시행 중일 수 있습니다. <u>카운티의 현지</u>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참고: 본 지침은 중앙 활동이 고객이 공유 공간 주변을 이동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컨벤션 스타일 행사 또는 일반 입장 장소/활동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참고: 이 지침은 실제 관객 없이 운동 훈련 및 경기로의 복귀를 통제하는 기존 기준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라이브 관객이 없는 훈련이나 경기의 경우, 프로 운동선수, 코칭 직원, 의료진, 방송 직원 및 기타 관계자들은 해당되는 경우 스포츠 시설이나 행사에서 현지 공중 보건 책임자가 승인하고 노사가 동의한 COVID-19 프로토콜을 참조해야 합니다. 대학 운동선수는 고등 교육기관 지침의 구체적인 훈련 및 경기 복귀 기준을 따릅니다. 기타 모든 운동선수는 CDPH 청소년 및 성인 스포츠 지침의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참고: 공연장에는 다른 지침에 포함되고 <u>더 안전한 경제를 위한 청사진 웹사이트</u>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운영 측면과 서비스 항목이 있습니다. 본 문서에서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다음을 포함한 공연 그룹 및 장소는 이 지침을 검토하여 운영의 모든 측면에 적절한 프로토콜을 적용해야 합니다.

- 식당(식당 지침)
- 바(바 지침 참조)
- 기념품점 및 소매점 운영(소매점 지침 참조)
- 호텔 및 숙박(호텔, 숙박, 단기 임대 지침 참조)
- 영화관 및 드라이브인 영화관(영화관 지침 참조)
- 트램, 셔틀 및 기타 환승(<u>공공 및 개인 여객기, 환승 및 시외 승객 철도 안내</u>) 장애인에 대한 의무사항에 따라 그리고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셔틀 서비스를 제한해야 합니다.
- 유지보수 및 관리 작업 서비스(제한된 서비스 지침 참조)
- 실외 사업 운영을 위한 임시 구조물(<u>CDPH 지침</u> 참조)

본 지침은 근로자의 모든 법적 권리, 규범적 권리 및 단체 교섭으로 얻어낸 권리를 박탈하거나 무효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며, 지역 보건 보건 명령을 포함하지 않고 2020년 11월 30일에 발효된 긴급 임시 표준을 포함한 Cal/OSHA의 모든 기존의 또는 신규 안전 및 보건 관련 규제 요건을 대체하지 않으므로 모든 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괄하지 않습니다. 1 COVID-19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공공 보건 지침 및 주/지역 명령에 대한 변화에 대해 항상 최신 정보를 유지하십시오. Cal/OSHA는 Cal/OSHA COVID-19 G지침과 리소스 웹사이트에서 추가적인 안전과 건강 지침을 제공합니다. CDC(질병 통제 예방 센터,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는 사업체 및 고용주 및 음식점과 식료품 소매점 관련 추가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면 가리개 필수 사용

자택 외 모든 공공장소 및 직장 환경에서 일반 시민 및 직원 모두가 안면 가리개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지침인 <u>안면 가리개 사용에 관한 캘리포니아 주 공공보건국(CDPH) 지침</u>을 참고하십시오. 모든 요건과 이러한 규칙에 대한 예외 사항을 비롯한 전체 세부 사항은 지침에서 보실 수 있으며 업데이트 내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CDPH는 얼굴 가리개에 관한 효과적인 관행에 대한 <u>조언</u>을 제공합니다.



직장 COVID-19 예방 프로그램

Cal/OSHA COVID-19 예방 표준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고용주는 직원 및 승인된 대리인(즉, 노조)이 이용할 수 있는 서면 COVID-19 예방 프로그램을 수립, 이행,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에 대한 모든 요건 및 면제, 모델 COVID-19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템플릿, 자주 묻는 질문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참고 자료 및 지침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발병 및 검사

고용주는 또한 <u>직원에 대한 일체의 관련 검사 요건</u> 및 <u>보고 요건</u>을 포함하여, <u>발병 및 대유행</u>에 대한 Cal/OSHA 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규정의 추가 고려사항과 설명을 위해 대유행에 관한 FAQ 를 검토해야 합니다.



발병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모든 필수 보고 요건에 대해서는 <u>CDPH의 직장 내</u> COVID-19 대응을 참조하십시오.

개별 통제 조치 및 선별 검사

Cal/OSHA ETS는 고용주가 COVID-19 증상이 있는 직원을 선별하고 이에 대응하는 절차를 개발하고 시행하며, COVID-19 예방 프로그램의 필수 구성 요소를 시행하여 여러 가지 다른 개별 통제 조치를 다룰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자료를 참조하십시오.

고용주는 ETS에 따른 요구 사항 외에도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대중이나 직원들이 먹거나 마시는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안면 가리개(마스크)를 사용해야 하고(ETS나 CDPH 안면 가리개 사용 지침에 의해서 면제되는 경우 제외), 물리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할 뿐 아니라, 얼굴을 만지지 말고, 최소 20초 동안 비누와 물로 자주 손을 씻고, 손 소독제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안내 방송이나 전략적으로 눈에 잘 띄는 위치에 그리고 예약 확인서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의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CDPH는 전염 또는 기타 건강 위험을 더욱 완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추가 조치를 권장합니다.
 - o 아프거나 COVID-19 증상을 보이는 손님이나 고객은 자택에서 머물 것을 권장합니다.
 - 개인 위생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티슈와 비접촉식 쓰레기통, 손 비누, 손 씻기 충분한 시간, 알코올을 주 성분으로 하는 손 소독제,

일회용 타월이 해당됩니다.

o 일반적으로 만지는 물건을 취급할 때와 같이 일회용 장갑이 손 씻기 또는 손 소독제 사용에 유용한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을 고려하십시오.



확기

• 실내 운영이 허용된 모든 사업체는 실내 환경에서 COVID-19의 확산을 줄이기 위해 CDPH 및 Cal/OSHA의 <u>환기, 여과 및 대기질에 대한 임시 지침</u>을 따라야 합니다. 이 지침은 또한 Cal/OSHA COVID-19 ETS에 포함된 환기 요건을 다룹니다.



• 환기에 대한 자세한 추가 지침도 CDC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 및 소독 절차

- 고용주는 Cal/OSHA <u>COVID-19 ETS</u>에 정의된대로 세척 및 소독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청소 및 소독은 작업자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 CDPH 지침은 ETS 에 따른 요건 이외의 추가 요건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CDPH 는 전염 또는 기타 건강 위험을 더욱 완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추가 조치를 권장합니다.
 - o <u>레지오넬라 페렴</u> 및 물과 관련된 기타 질환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간의 시설 폐쇄 후에도 모든 물 관련 시스템과 기능(예: 음수대, 장식용 분수)의 사용이 안전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근무자가 근무하는 동안 세정 실행 항목을 시행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청소 업무는 직원 직무의 일환으로 업무 시간 동안 할당합니다. 필요에 따라 제3자 청소 업체에 외주 용역을 주는 방식을 이용하면 청소에 대해 충족시켜야 할 요건이 늘어난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되도록이면 움직임 감지 조명, 비접촉식 결제 시스템, 자동 비누 디스펜서 및 종이 타월 디스펜서, 출퇴근 시간 기록 카드 시스템 등의 핸즈프리 장치를 설치하십시오.
 - o 고객들에게 직불 또는 신용 카드를 사용하도록 권장(예를 들면 안내 표지판을 통해서)합니다.
 - 살균용 화학 제품을 선택할 때, 환경 보호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승인 목록에 나와 있는 COVID-19 예방용으로 사용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며 제품 설명서에 나와 있는 지침을 따릅니다. 과산화수소(3% 이하) 또는 에탄올(에틸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으며 과산화아세트산 또는 과아세트산을 함유하지 않은 EPA의 "N" 목록에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 천식을 유발할 가능성이 낮은 소독제를 선택합니다. "N" 목록에 있는 소독제 제품 중에서 표백제(차아염소산나트륨) 또는 4차 암모늄 화합물(예: 염화벤잘코늄)과 같이 천식 유발물질이 포함된 제품은 피하십시오. 캘리포니아 공공보건부에서 권장하는 천식 환자에게 안전한 청소 방법을 따르고 적절히 환기합니다.



물리적 거리두기 지침

- 물리적 거리두기만으로는 COVID-19 전염을 방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 고용주는 Cal/OSHA <u>COVID-19 예방 ETS</u>에 정의된대로 근로자와 다른 사람 간에 최소 6피트의 물리적 거리두기에 관한 프로토콜과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예시는 <u>Cal/OSHA의 FAQ</u>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CDPH는 본 지침의 의무적인 물리적 거리두기 요건 외에도 전염 또는 기타 건강상의 위험을 더욱 완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 직접 만나서 하는 회의를 피하되 꼭 필요한 경우라면 물리적인 거리를 확보하고 물리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더 적은 수의 인원이 시설에서 회의를 하도록 회의를 조정하십시오.
 - o 물리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될 수 있으면 입구와 출구를 확실하게 따로 지정하십시오.
 - o 되도록이면 선반과 게시판 같은 운반 보조 용품을 설치하여 사람 사이에 물건을 직접 전달하는 일을 줄이십시오. 되도록이면 배달 확인 서명 시 비접촉방식을 사용하십시오.
 - o 가능하면 물리적 거리두기를 보장하도록 차양 커버와 좌석 배치를 사용해 야외 휴게 공간을 만드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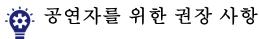
라이브 관객이 있는 장소를 위한 추가 권장 사항 출입 및 보안 권장 사항

- 플렉시 글라스와 같은 불투과성 장벽을 사용하여 매표소를 보호합니다. 최소 6피트의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줄을 서야 할 곳을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 이벤트 종료 시 장소의 순차적 퇴장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입장 및 퇴장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 가방을 점검하는 직원은 고객 물품에 직접 닿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활동을 수정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가방을 검색하기 위해 스타일러스나 기타 도구를 사용하는 것, 고객에게 가방을 열고 내용물을 옮기도록 요청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행으로 인해 고객이나 고객의 물품과 직접 접촉하게 될 수 있는 경우, 직원은 즉시 손을 소독하거나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각 고객 검색 사이에 교체해야 합니다.
- 참석자의 개인 물품을 만지지 않으려면 운영자는 소형 투명 가방 정책을 시행하고 고객에게 검사를 위해 자신의 가방을 열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의료 및 개인 위생 제품에 필요한 예외를 고려하십시오.
- 작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최소 6피트의 물리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핸드 완드 금속 탐지기가 아닌 문형 금속 탐지기의 사용을 고려하십시오.

- 가능한 한 무터치 티켓 스캐너를 설치하고 사용하십시오. 디지털 전자 기기 또는 종이 티켓을 직원과 고객 간에 주고 받는 대신 티켓을 직접 스캔하도록 고객에게 요청합니다.
- 직원이 불필요하게 고객 물품을 만져야 하고 다른 가정에서 오염된 물품을 접촉할 위험이 높은 외투 검사 및 기타 편의 서비스를 중단합니다.
- 휴식 시간 동안 행사장 구역으로 질서있게 출입할 수 있도록 안내인을 배정합니다. 안내인을 이용하여 대기 구역에서 적절한 공간을 유지하고, 추가 공간이 있으면 서 있을 곳을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줄이 시작되는 곳을 고객이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 음식과 음료 매점이 있는 장소는 가능하면 고객이 온라인이나 전화로 주문하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 상품 및 기타 소매 판매 부스와 구역을 재구성하여 직원과 고객 간의 물리적인 거리를 유지합니다. 사전 주문, 비접촉 결제 및 고객이 소매 영역에서 소비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기타 시스템을 장려합니다. 고객이 상품을 체험해보도록 허용하는 것을 중단합니다.



제작 부서를 위한 추가 권장 사항



- 대규모 그룹 또는 앙상블에서 공연할 때는 예방법을 사용하고, 사례별로 이러한 활동의 필요성을 평가합니다. 백그라운드 플레이어, 대역 및 기타 필수적이지 않은 공연자는 불필요하게 붐비는 대기 구역에 머무르지 않아야 합니다. 홀딩/오프스테이지 구역은 공연자, 백스테이지 작업자 등 사이에 충분한 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커야 합니다.
- 공연 그룹들은 얼굴 가리개를 착용할 수 없는 경우, 물리적인 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공연자들이 자신 또는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만져야 하는 경우 등에는 리허설을 수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 공연자들이 더 많은 입자, 에어로졸 및 비말을 방출하고 더 멀리 이동하게 만드는 음성 프로젝션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가능한 최대한으로 마이크를 사용하십시오.
- 미성년자인 공연자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동행해야 합니다. 아동에게는 제공된 보호 장비 및 안전 프로토콜의 사용에 관한 특별 안내 및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縫 음악 공연자를 위한 권장 사항

• 공연자는 가능하면 워터 키를 일회용 또는 종이 타월에 비우고, 액체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비울 때는 다른 사람에게서 돌아서야 합니다. 뮤지션은 본인이 사용하 타월을 직접 버리고 버린 후에는 이 지침에 설명된대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뮤지션이 일회용이 아닌 수건에 워터 키를 비우는 경우, 수건을 공연이나 연습장에 가져갈 때 세척하고, 뮤지션이 분리하여 다른 사람이 세탁할 수 없도록 밀봉된 용기에 넣은 후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 연습 전후에 집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닦기 및 불기 등 악기 세척을 수행하십시오.
- 가능하면 악기를 공유하지 마십시오. 페이지 터너와 같은 뮤지션 보조원 또는 최소 6피트의 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의 보조를 중단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 야외에서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을 때 노래나 성가를 부르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 간의 거리, 또는 관악기 연주자와 다른 사람들 간의 거리를 6피트 이상으로 늘리십시오. 이러한 경우 추가적인 분리를 위해 장벽 사용을 고려하십시오.
- 관악기 연주자들은 에어로졸을 포집하거나 악기로부터 방출된 공기를 재유도하는 장치와 같은 추가적인 수단을 적절히 사용해야 합니다.



리허설에 대한 권장 사항

- 안면 가리개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오염된 호흡기 에어로졸(예: 노래, 구호, 금관 및 목관악기 연주 등)로 인한 전염 가능성이 높은 공연 및/또는 연습은 가능하면 야외에서 해야 합니다. 공연자는 최대한 소그룹으로 연습하고 공연해야 합니다.
- 작업자들이 리허설 중에 얼굴 가리개를 착용할 수 없는 경우(예: 오페라 가수, 목관/금관악기 연주자 등) 운영자는 엄격한 소규모 그룹 유지, 리허설 및 공연 시즌 동안 참가자에 대한 최소 주 1회 검사 실시,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의 수와 시간 제한,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과 다른 사람 사이에 최소 6피트의 물리적 거리 유지, 사람들 사이에 불침투성 장벽 설치, 적절한 환기 등을 포함하도록 리허설 활동을 수정해야 합니다.
- 대규모 그룹이나 앙상블 공연 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공연에 대규모 그룹이 필요한 경우 전체 그룹이 서로 가까이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십시오(예: 하위 그룹에서 리허설).



✗ 여행을 위한 권장 사항

- 제작 부서는 여행이 필수인지 평가해야 하며 여행을 요청받는 작업자의 수를 제한해야 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CDPH 여행 권고안을 확인하고 항공 여행에 관한 CDC 지침을 검토하고 모든 여행 중인 직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고하십시오.
- 다음을 포함하는 상세한 여행 프로세스와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 o 소규모 여행 그룹 구현.
 - o 행사 장소 근처에 있는 시설에서 필요한 숙박 및 식사 요구사항과 잠재적인 의료 수요를 지원할 수 있는지 확인.

- o 국가별 현지, 주 및 CDC 여행 권고안을 검토하고, 전염이 광범위하게 진행중인 국내 및 해외의 모든 목적지 피함.
- o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 돌아온 후 자가 격리에 관한 관련 현지 또는 주 지침을 따르십시오.
- 다른 투숙객이나 호텔 직원과 교류할 수 있는 호텔 객실 대신 작업자의 아파트 투숙을 고려하십시오.
- 작업자들은 동일한 소규모 여행 그룹에 속하지 않은 경우, 가능하면 자신의 차량으로 별도로 운전해야 합니다.
- 호텔에 많은 수의 작업자가 있는 경우, 버스 교통편을 고려하십시오. 공유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물리적 거리두기를 지원하기 위해 차량당 탑승객 수를 최소화하고 승객들에게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도록 요구하십시오.

😾 캐스팅 및 오디션 권장 사항

- 라이브 방송 기능을 갖춘 원격 캐스팅 세션 및 콜백을 고려하십시오. 가능한 경우 대면 오디션 대신 직접 만든 테이프 제출을 권장하십시오.
- 기밀 유지 요건에 따라 대본, 음악 등을 종이 서류가 아니라 디지털 방식으로 배포하십시오.
- 물리적 거리두기를 수용할 수 있도록 시차를 두고 대면 오디션 및 콜백 일정을 잡으십시오. 대면 오디션을 받는 사람들에게 지정된 시간에 캐스팅 및 오디션 장소에 도착하도록 요청하십시오.
- 캐스팅 시설의 대기실이 아니라 차 안에서 기다리도록 장려하십시오. 사람들의 약속을 체크하고 오디션이 시작될 때 문자를 보내는 앱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 사람들 간에 전달되는 품목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품 취급을 시뮬레이션하는 옵션을 고려하십시오.
- 질병 발생 시 백업 인물 선정 및 가용성 확보를 고려하십시오.

🌠 건설 공장 및 세트 설계에 대한 권장 사항

- 건설 공장 및 세트 설계 고용주는 보다 안전한 경제를 위한 청사진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건설 및 제조 산업에 대한 추가 지침을 참조해야 합니다.
- 세트 설계 팀이 다른 작업자와 상호작용하지 않고 공연 전에 장소를 완전히 세팅하는 것을 포함하여 프로덕션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십시오.
- 현장의 직원 및 공연자 수를 제한하고 공연자 간의 물리적 거리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무대 레이아웃을 개발하십시오.

• 주요 소품, 가구 또는 작업자와 반복적이고 정기적으로 노출되는 기타 세트 장비에 대해 추가적인 세척 및 소독 방법을 개발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주요 소품과 접촉하는 사람의 수를 제한하십시오. 예를 들어, 지정된 직원 또는 관련 출연진만 그러한 소품을 취급하도록 하십시오.

장면, 사운드, 소품, 장비, 특수 효과 및 조명에 대한 권장 사항

- BOH(Back-of-House) 프로덕션 부서에 필요한 직원 수를 제한하고/제한하거나 서로 별도로 작업을 완료할 수 있는 방법을 식별하는 옵션을 고려하십시오. 예를 들어, 가능한 경우 다른 부서가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조명이 완료될 때까지 조명 부서가 세트에서 단독으로 작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긴밀한 접촉이 포함된 표준 작업 과정(헤비 리프팅, 시저 리프트, 조명 그리드, 움직이는 대형 램프, 직물 묶기 등 밀폐 공간에서의 작업)으로 인한 위험 증가를 평가하고, 가능한 경우 이러한 작업 과정을 수정하고, 작업자가 적절한 보호 장비에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 프로덕션 품목의 공유 사용을 단일 직원 또는 기능 팀으로 제한합니다(예: 음향 장비는 지정된 사람 또는 팀이 취급해야 함).
- 음성 프로젝션을 줄이기 위해 마이크 사용을 권장하십시오.
- 작업자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경우, 음향팀이 사전에 의상에 배선하여 준비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복장 및 의상에

복장 및 의상에 대한 권장 사항

- 공연자들이 복장을 갖춰 입은 상태로 도착할 수 있는 옵션을 고려하십시오. 가능한 경우, 백그라운드 공연자들이 집에서부터 자신들의 옷을 입고 오도록 권장하십시오. 물리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경우 물리적 거리두기를 허용하도록 드레싱 구역을 구분하십시오.
- 의상 드레싱 및 빠른 변경 프로토콜이 엇갈리게 배치되고 의상 관리인이 감독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각 캐스트 멤버의 복장 및 의상 용품은 라벨이 부착된 별도의 비닐 봉지에 보관해야 합니다.

LA 헤어 및 메이크업을 위한 권장 사항

- 헤어 및 메이크업 직원은 <u>위험 감소를 위한 업계 지침 웹사이트</u>의 미용실 및 기타 개인 관리 서비스에 대한 추가 지침을 참조해야 합니다.
- 사용 후 매번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붙임머리 또는 가발을 철저히 청소해야 합니다.
- 메이크업 도구 및 용품은 공연자별로 구입하고 해당 개인에게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용품은 개별 캐스트 백에 보관해야 합니다.

- 파운데이션, 파우더, 립스틱, 기타 메이크업 아이템을 일회용 팔레트에 넣서 각 개인에게 사용하십시오. 각 사람에게 일회용 도구를 사용하십시오(예: 마스카라 봉, 립 브러시, 아이라이너 스틱, 면봉, 파우더 퍼프 등).
- 공연자들은 추가 접촉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경우 경미한 터치업을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공연자는 하루 일과가 끝날 때 접촉을 제한하기 위해 자신의 메이크업을 스스로 제거해야 합니다.



¹취약한 사람들에 대해 추가적인 준수 요건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반드시 모든 <u>Cal/OSHA</u> 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표준의 지침을 비롯하여 <u>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u> 및 <u>캘리포니아주</u> <u>공공보건부(CDPH)</u>의 지침을 준수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고용주는 이러한 지침의 변경 사항에 따라 운영 방침을 변경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